

보도시점

국무회의 종료 시

배포 2024. 10. 15.(화) 08:00

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·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한다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15일(화) 국무회의 의결

-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·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·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.
 - 여성가족부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) 개정안이 15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‘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·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,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.
 -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·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
 -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
- ※ 성범죄자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△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△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로 취업 시점과 현 시점 사이 발생한 성범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

- 또한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,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였다.

<시행령 주요내용>

- 성범죄자의 아동·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점검·확인 결과를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·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, 공개기간을 12개월까지로 함(안 제27조제1항)
-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29조제1항)
-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9조제2항)
-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 보완(안 제32조4호)

-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.”며,
 - “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·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신규조문대비표

담당 부서	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	책임자	과 장	정희진 (02-2100-64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진 (02-2100-6416)
			주무관	오미영 (02-2100-640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



②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·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2.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
3.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
4.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[주소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로 한다]

제29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)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(고소·고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

제출받은 각 기관의 점검·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운영,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

- 3 .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

4. ----- 운영,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하고

제29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) ① -----

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32조(포상금의 환수)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-----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----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

제32조(포상금의 환수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